

여수시도시관리공단 성과관리 운영 규정

제정 2022.12.9. 규정 제131호
일괄개정 2024.5.7. 규정 제176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의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공단의 능률성·효과성·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“성과관리”란 여수시도시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 경영목표달성과 조직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수립, 목표설정, 실행, 성과평가, 평가결과 활용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.
- “성과평가”란 공단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, 추진상황, 추진성과, 업적 등을 점검·분석·평정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성과관리 원칙) ① 성과관리는 업무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,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.

② 성과관리는 성과·정책품질 및 시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.

제4조(성과관리 및 평가계획) ① 이사장은 공단의 비전,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.

-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- 공단의 임무·전략목표·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
- 성과관리 및 평가 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
- 성과평가 결과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

② 성과지표는 가능한 객관적·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, 객관적·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.

제5조(성과평가의 실시) ① 이사장은 성과관리 대상이 되는 부서 및 개인의 성과를 성과목표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평가한다. 다만,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시 정성평가 등을 할 수 있다.

② 성과평가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평가한다.

제6조(성과관련 조사 등의 위탁) 이사장은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·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7조(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) ① 성과평가의 결과가 확정되면 성과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각 부·소 또는 개인의 요청 시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단, 부·소 평가는 결과등급(순위), 개인평가는 본인 점수만 공개하도록 한다. <개정 2024. 5. 7.>

②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 단, 비계량(정성)지표 항목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③ 성과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확인·검증하고, 신청내용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과평가를 조정할 수 있다.

④ 성과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조정된 결과를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당사자는 그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.

제8조(성과평가 결과의 반영) 이사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,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직원에게 포상이나 평가급 지급 또는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성과관리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 뒤 3명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한다.

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, 1년 연임이 가능하다.

④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구성한다.

가. 이사장

나. 경영본부장

다. 사업본부장

라. 공공기관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
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한다.

⑥ 간사는 성과관리부서장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
2. 성과평가 및 결과(이의신청) 등에 관한 사항
3.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11조(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)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위원은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2조(위원회의 자료요구 등)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면,

성과평가대상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은 성과평가대상은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.

제13조(위원의 수당 등) 외부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

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 <제131호, 2022. 12. 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76호, 2024. 5. 7.>

이 규정은 202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】

이의 신청서(제7조 관련)

소속		직급		성명	
평가급 지급등급					
이의신청 사유 (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)					
기타 참고사항					
「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」 및 「여수시도시관리공단 성과관리 운영규정」에 의하여 위와 같 이 이의신청을 합니다.					
년 월 일					
이의신청인	직급	성명	(서명)		
성 과 관 리 위 원 회 귀 중					